202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한-베트남·태국·중국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가 간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기술교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상반기 한-베트남·태국·중국 해외기술교류 현지 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해외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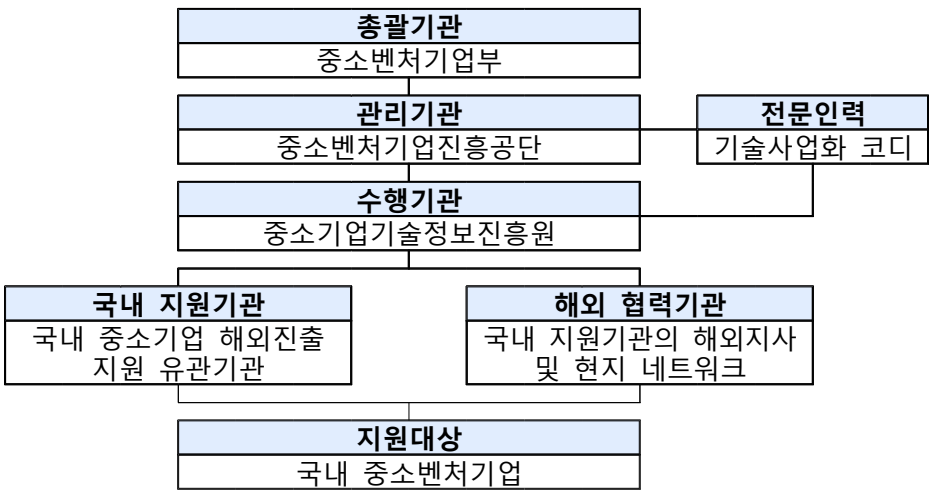
1 운영개요

□ **목 적** : 해외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온·오프라인 기술교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기반 해외진출 및 기술수출 촉진

【 기술수출 유형 】

- **(라이선스)** 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료(Royalty) 지급
- **(합작투자)** 자본·기술 등의 공동투자를 통해 현지 합작법인 설립
- **(OEM생산)** 현지에서 부품, 제품 등의 생산을 위한 제조기술 이전
- **(설비이전)** 생산설비 및 가동 기술의 패키지 이전
- **(기타)**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산업재·자본재 및 기계 설비 수출, 고유기술, 관리기술 관련 노하우 수출, 공정 안정화, Parameter Setting, 기술 서비스 및 기술인력지원

□ **추진체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상담회 상세정보

○ 모집국가 : 베트남·태국·중국

【 국가별 중점 모집 분야 및 협력기관 】

국 가	지 역	중점 모집 분야 (이외 분야 기업도 신청 가능)	국내 지원기관	진행방식
베트남	호치민	①농업(스마트팜, 유기농업 등) ②환경(자원 재활용 및 순환 등 친환경 관련) ③헬스케어(소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등	KTR	오프라인
태국	방콕			
중국	상해	①ICT(AI, 메타버스 등) ②식품(기능성 식품·원료 및 PET 푸드 등) 등		온라인

* 상기 모집 분야는 중점 협력 분야 예시이며, **이외 기타 분야 기업도 신청 가능**

○ 진행일정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중국(상해)
지원기업 선정	접수마감 이후 2주 이내		
해외기업 발굴·매칭	~4월 중	~5월 중	~6월 중
상담회	**4월 중 예정**	**5월 중 예정**	**6월 중 예정**

* 한정된 수혜기업 모집을 위하여 조기 접수마감 및 일정 변동이 가능하며, 현지 기업과 매칭완료 후 상담회 최종일자 별도 안내

○ **개최장소** : (호치민·방콕) 현지 행사장, (상해) 온라인 비대면

○ **진행방식** : 현지기업과 1:1 온·오프라인 기술상담 실시

- 국가별 엔데믹 대응 차원으로 국경개방에 의한 국가 간 교류·협력 재개에 따라 **대면(오프라인) 교류회 추진(베트남, 태국)**

  * 국경봉쇄 및 비자 등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중국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회** 운영

- 시장조사, 해외기업 사전 매칭 등을 위한 참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유의사항

- 현지 대면 기술교류회의 경우 기술교류단 구성 및 파견

  *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개별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이며, 사전에 상세안내 예정

- 국제정세, 코로나-19 등 대내외 변수 발생시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 가능하며, 해외 수요·상황에 따라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매칭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상담회 外 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만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 상세내용 (예시) 】

□ 기술교류 상담회

○ 해외 매칭기업 발굴, 보유기술에 대한 전문가 사전 진단, 기술소개 자료 번역 등 지원

○ 온·오프라인 상담장 제공·운영 및 향후 계약체결 추진 시 법률 자문·통번역 등 지원

□ 기술역량 강화

○ 필수역량 교육 : 해외 현지 시장·기술·산업 동향, 기술무역 및 비즈니스 필수사항 등 해외기술교류를 위한 역량 세미나 제공

○ 핵심분야 교육 : 중소기업 해외진출 시 필요한 분야별 역량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예시) ①IP전략, ②기술이전 및 사업화 방법론, ③비즈니스 전략, ④기술보호 전략 등

□ 성과 제고

○ 상시기술교류 : 기술교류 상담회 旣참여기업의 후속 교류·법률 자문·홍보·통번역 등 지원

○ 상시 모니터링 및 전문가 밀착지원 : 지원기업 성과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사후관리

○ 협약·계약 성과 홍보 : 기업별 성과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채널을 통한 대외홍보 등

○ 기타 지원: 현지공장 대리방문(인프라 점검), 샘플 발송 등

□ 보유기술 홍보

○ 국제기구 DB 등재 및 홍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UN 산하기관(UNIDO 한국사무소) 간 협력을 통해 국제기구 단독 발간물에 동 사업 참가기업 중 우수 기업의 보유기술 등록 및 국내외 홍보 지원

□ 타 사업 연계지원

○ 해외 시험·인증: 해외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자문 등 지원

* 상기 내용은 지원 차수별 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 유무 및 지원기업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3 추진절차

단 계	주요 내용	주 관
참가기업 모집	현지기업에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모집	**TIPA**
⇩		
예비 심사	지원요건 검토 등을 통해 진단기업 선별	**TIPA**
⇩		
공급기술(업) 진단	국내기업 공급기술의 기술교류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진단 실시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		
신청기업 평가·선정	기술교류 상담회 참가 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TIPA**
⇩		
수요기술(업) 발굴·매칭	해외기업 수요기술을 발굴하고, 국내기업 공급기술과 매칭	**국내외 협력기관**
⇩		
기술교류 상담회 진행	국내-해외기업 간 1:1 온·오프라인 상담회 진행	**TIPA, 국내외 협력기관**
⇩		
사후관리	기술수출 계약 체결 촉진을 위한 참가기업 현황 파악 및 후속 지원	**TIPA, 국내외 협력기관**

※ 상기 내용은 해외 현지상황 및 추진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용어 해설 >

- **공급기술** :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기업에 기술이전 등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
- **수요기술** : 해외 현지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 신청기술에 대한 진단, 기업 간 기술매칭, 협상·중재,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술진단 전문가(중진공 운영)
- **후속지원** : 상담회 이후 기술수출 계약 체결 추진 시, 법률자문, 통번역 등 지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3. 2. 24(금) ~ '23. 3. 10(금)

* 현지 상황에 따라 조기 접수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별첨파일 참조)

①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에서 공급기술 등록

- www.g-tep.or.kr 접속 및 로그인 → PMS 클릭 → 공급기술 등록

② 정기기술교류 신청

- 정기기술교류 클릭 → 기정원 주관의 접수중 항목 클릭 → 신청

※ 신청 기업별 온·오프라인 개최국을 혼합하여 최대 2개 국가까지 신청이 가능
(예시) 베트남(오프) + 중국(온) : 신청가능, 베트남(오프) + 태국(오프) : 신청불가

□ 신청 조건

【 지원 상세조건 】

<필수 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우대 조건> : 7페이지 "우대가점" 참조
- 해외기술 이전·수출을 위한 협약 혹은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수출 및 기술성 우수 강소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中企 전용 국제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성공) 기업

<지원 제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 참가신청 서약서	G-TEP 신청시 업로드*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계량지표)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직전년도)	
	• 특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 정부R&D사업 성공판정 공문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 인증서	
	• 고용창출 증빙(성과공유기업 확인서, 공제 가입증명서 등)	
	• 수출실적증명원(직전년도)	
선택 (우대가점)	• 글로벌강소기업 1000+(수출유망, 글로벌강소, 수출두드림 등 관련 인증서)	
	• MOU, 계약서 등 기술 이전·수출 증빙 사본	

* 단, 계량지표 각 항목에 대한 객관적, 정량적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 신청 사이트(G-TEP)에서 **업로드 제한용량 초과시, 제출자료 용량 축소후 제출 요망**

5 선정평가

□ 평가절차

○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된 기업에 대해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하여 해외기술교류 지원대상 여부 확정·통보

【 전체 평가절차 】

사업 신청	➡	예비심사	➡	공급기술 진단	➡	신청기업 평가	➡	선정결과 통보
중소기업		TIPA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TIPA		TIPA→ 중소기업

※ 공급기술 진단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는 전문인력(기술사업화 코디)가 사업신청기업에 개별적으로 연락한 후에 **현장 방문하여 지원기업 적합여부 판단(필요시)**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등 검토를 통해 해외 기술수출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중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국가별 10개 내외)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 최종선정

*** 접수 마감일까지 G-TEP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만 검토 후 계량·우대 점수 부여**

□ 평가기준

※ 향후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시, 참가기업에 추가 안내 예정

❶ 계량지표 (50점)

순번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증빙서류	배점
1	경영안정성 (10)	· 매출액 규모 * 5억/10억/50억/100억/100억이상	직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5
		· 신용평가 등급 * A이상/BBB/BB/B/CCC이하	-	5
2	기술성 우수기업 (25)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보유건수 * 0개/1개/2개/3개/4개이상	특허·실용신안증 또는 등록원부	10
		· **최근 3년 이내 정부R&D 사업 참여기업*** * 0개/1개/2개/3개/4개이상	R&D 완료(성공) 판정 공문	10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 0개/1개/2개/3개/4개이상	관련기관 인증서	5
3	고용창출 우수기업	· 성과공유기업	성과공유기업 확인서(1점)	5

	(5)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공제 가입증명서 (개당1점/최대 2점)	
		·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터혁신 우수기업(신규)	관련기관 인증서 (개당1점/최대 2점)	
4	수출 우수기업 (10)	· 최근 1년간 수출금액 * 없음/1만불/10만불/50만불/50만불이상	직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직·간접수출실적)	10
계량지표 합계				**50**

❷ 비계량지표 (50점)

순번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점
1	사업추진 여건 (10)	· 조직 및 인력 수준(R&D, 해외영업)	선정 평가위원회 (전문가 평가)	5
		· 해외진출 의지 *영문 홈페이지, 회사소개서, 제품(기술) 카달로그 등 보유 여부		5
2	기술수출 가능성 (20)	· 기술의 경쟁력 및 차별성		10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용이성		10
3	현지 시장성 (20)	· 현지 시장수요		10
		· 수요기업(현지 바이어) 발굴 가능성		10
비계량지표 합계				**50**

❸ 우대가점 (최대 8점)

순번	우대 항목	세부 우대내용	제출필요 증빙서류	가점
1	해외기술 이전·수출 경험	· 해외기술 이전·수출을 위한 협약 혹은 계약을 체결한 기업	MOU/NDA, 계약서, 인보이스 등 기술수출 증빙 사본	3
2	수출 우수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3개 인증 통합	관련기관 인증서	2
3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中企 전용 국제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성공) 기업***	-	3
우대가점 합계				**8**

* 해외원천기술상용화R&D,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R&D, 기술혁신개발(수출지향형), 구매조건부(해외수요처) 등 4개 세부(내역) 사업 완료 건에 대하여 증빙제출 없이 모집기관(TIPA) 내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

6 문의처

□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협력실)	ㅇ 참가기업 모집, 선정평가 ㅇ 공급기술 진단(중진공 운영) ㅇ 기타 해외기술교류회 관련	☎044-300-0445
지원기관 (국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사업센터)	ㅇ 국내-해외기업(기술) 매칭 ㅇ 기술교류 상담회 운영 및 후속 지원 ㅇ 해외 시험·인증 컨설팅 등	☎02-2164-1475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공고 및 신청·접수)**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G-TEP): http://www.g-tep.or.kr
(해외기술교류 사업신청 - 정기기술교류)

○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붙임1 국내 지원기관 안내

구 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개요	시험/인증/컨설팅 전문기관
설립연도	2010년
기관유형	재단법인
해외 주요 네트워크	해외 4개국 총 6개 지사 및 30여개국 파트너기관
지원국가	중국, 베트남, 태국, 우즈벡,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등
후속연계 사업	국내외 시험/인증/컨설팅
강점	기술·제품 해외수출 지원역량 및 연계지원
홈페이지	http://www.ktr.or.kr
문의처	글로벌사업센터 (☎ 02-2164-1475)

붙임2 **참가신청 서약서 양식**

※ G-TEP 정기기술교류 신청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업로드

참가신청 서약서

당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해외기술교류 상담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동 사업의 참가 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사업 지원 기간 중 국내 및 현지법을 준수하며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현지 파견 직원은 파견기간 중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 및 여행운영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 등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 타 기업 또는 현지 기업의 대리 참가 등 본 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당사는 주관기관에서 규정하는 하기 불성실업체 참가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당사의 불성실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주관기관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통상사업 불성실기업 사업참여 제한 규정】

※ 기준 : 불성실 행위발생 연도 다음해부터 통상사업에서 제외

※ 지원제한 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상담회 선정 후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후, 출발 전 기업의 내부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상담회 참가 시 현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또는 불참하는 경우
- 현지 매칭기업 발굴 종료 후 현지 파견을 포기하는 경우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붙임3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 G-TEP 정기기술교류 신청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업로드

2023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외기술교류사업 지원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 목적

① 해외기술교류사업 국내 참가기업과 해외 현지기업 간 공급-수요기술 매칭
② 교육, 세미나 및 컨설팅 등 기술교류 역량강화 지원
③ 온·오프라인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운영
④ 후속지원 및 성과 관리 등

□ 제공 항목

○ 기업정보(기업명 등), 수요·공급기술정보 및 공급기술진단보고서 등 제출서류

□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

□ 보유・이용 기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외기술교류사업 참여종료 후 5년 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동의서의 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보 미제공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의 일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상기 목적에 따라 제공항목에 기재된 사항을 지원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붙임4 **G-TEP 정기 기술교류 신청 매뉴얼**

1. G-TEP 접속 및 공급기술등록





1. 해외기술교류 온라인 플랫폼(www.g-tep.or.kr)에 접속합니다.
2. 한국어(KOREAN) 버튼을 클릭합니다.
3. G-TEP 미 가입 기업은 회원가입 이후 공급기술까지 등록합니다.
4. 공급기술 등록 시 신청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G-TEP 로그인





1.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ID/PW를 입력합니다.
2.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PMS(마이 페이지)에서 '정기기술교류' 탭을 클릭합니다.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정기기술교류 공고확인





1. 정기기술교류 페이지에서 주관기관이 '기정원'인 게시글을 클릭합니다.

2. 상세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정기기술교류 신청①





1. 공급기술 등록 시 입력했던 기업 정보를 재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국가와 국내 지원기관을 선택합니다.

3. 상담회에서 매칭되길 희망하는 수요기술(기업)이나 기타 의견을 작성합니다.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정기기술교류 신청②





1. '서약서'와 '기업정보 이용활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및 직인 날인하여 스캔본을 업로드 합니다.
2. 계량지표,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3.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제출 후에는 접수 상태가 '신청완료'로 변경됩니다. 클릭하여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정기기술교류 접수 확인





1.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접수 마감 전까지 내용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